



제1705호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096 호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기 획 예 산 과	2
○ 규	칙 제 1097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 획 예 산 과	6
○ 규	칙 제 1098 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 획 예 산 과	18
○ 규	칙 제 1099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 획 예 산 과	26
○ 규	칙 제 1100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 획 예 산 과	41

공 고

○ 공	고 제 1708 호 「운연동 음실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방 재 하 수 과 의 의견 청취 공고	52
○ 공	고 제 1716 호 「남동구 산후조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 건 강 증 진 과 고 및 의견수렴	57
○ 공	고 제 1719 호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추가)부의안전 공고 기 획 예 산 과	69
○ 보 건 소 공 고 제 8 6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 식 품 위 생 과 정 공고	11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9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96호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직접 이익”을 “이익”으로, “받는”을 “직접적으로 받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직접”을 “직접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규칙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남동구 공무원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해당 직종의 관련 법령 등을 따르되, 따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사업무를”을 “인사업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와”를 “이하”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의2) 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제3항제2호 중 “제 17조” 를 “제17조” 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1호 중 “금품 등” 을 “금품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서면” 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내부통신망등” 을 “내부통신망 등” 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붙여” 를 “첨부하여” 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사담당 부서장” 을 “행동강령책임관”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를 “제21조”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시행)에 따른 「남동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일부개정(‘22.6.2.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우리 구 지침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69(2022.6.15.)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라 정비

□ 주요내용

- 규칙의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서식 삭제(안 제5조, 안 제5조의2~안 제5조의6, 안 제13조, 안 제16조 및 별지 서식 제3·4·5·6·7·8·9·17호)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3조의3, 안 제14조의4)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규 칙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9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97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의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 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 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남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금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앞에서 말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대부(사용허가) 및 매수신청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 부
()매 수]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용 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의1 서식]

(앞면)

변 상 금 부 과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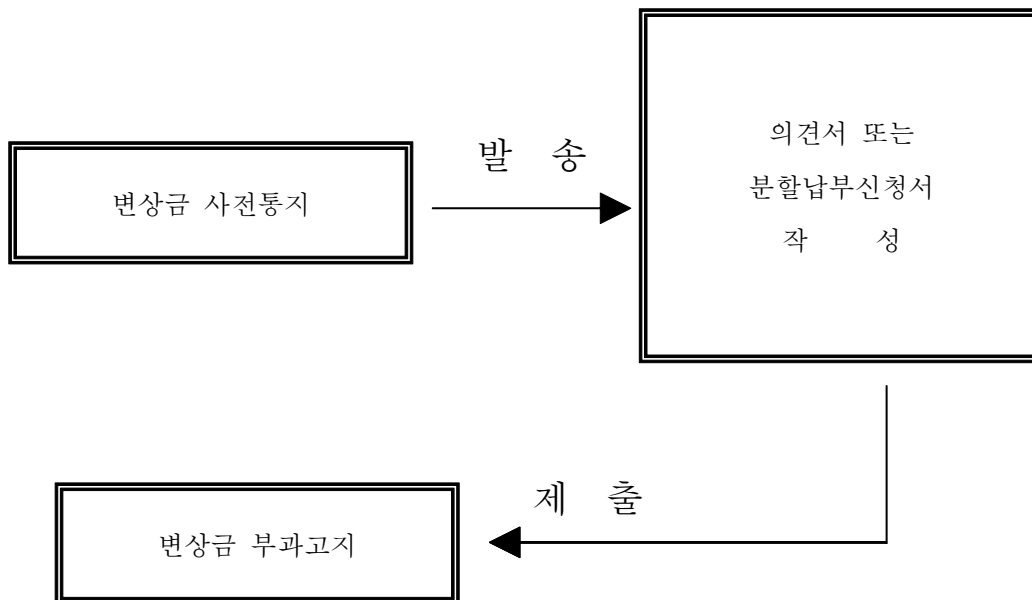
남동구청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21.)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제 20호의1서식
- 기타사항
 - 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규정 개정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제6조

규 칙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9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98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8” 을 “제18조” 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같음한다” 를 “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 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 품 (관리전환,) 합 의 서
무상양여

①()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 단 체 명		③ 소 관 기관명		④ 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⑬ (관리전환 무상양여) 의 조건							
⑭ (관리전환 무상양여) 의 필요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인계자 : 남 동 구 청 장 (인) 물품관리관 직 ·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 성명 (인)							
⑮()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 단 체 명		⑰ 소 관 기관명		⑱ 회계명			
⑲()받은 후		물품의 종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인수자 : 인 수 관 서 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카 드
등록번호

(갑지전면)

①정부물품 분류번호		②품명		③규격		④단위		⑤회계(계 정)분류		⑥정수		⑦내용 년수		⑧물 품 출납원①		⑨물 품 관리관①	
⑩ 년 월 일	⑪ 정리 구분	⑫ 단 가	⑬ 수입 (수량/ 금액)	⑭ 출급 (수량/ 금액)	⑮ 재고 (수량/ 금액)	⑯ 운용 (수량/ 금액)	⑰ 물 품 출납 원①	⑩ 년 월 일	⑪ 정리 구분	⑫ 단 가	⑬ 수입 (수량/ 금액)	⑭ 출급 (수량/ 금액)	⑮ 재고 (수량/ 금액)	⑯ 운용 (수량/ 금액)	⑰ 물 품 출납 원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갑지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 량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을지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 량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을지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 량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⑨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⑩ 년 월 일 : 생략
-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⑫ 단 가 : 생략
- ⑬ 수 입 : 생략
- ⑭ 출 금 : 생략
-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오류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으며, 현행 법규 및 규칙에 맞도록 정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오류기재 내용 수정 (안 제6조, 별지 제11호 및 제14호 서식)
-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삭제 1989. 2. 13)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에 따른 물품의 인계인수시 결재권한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조정 (안 제14조)

규 칙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9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99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 등은”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 을 “정리보류를 한” 으로,
“결손처분을 취소” 를 “정리보류를 취소” 로 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장” 을 “시장” 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을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 을 “영 제91조의11제5항”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환급금	(인)	
	정리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납세자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 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인)
					확인자 (과 장) :					(인)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을)]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

남 동 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남 동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2022.1.28.)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결손처분”의 사유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구분함(안 제13조~제16조, 안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0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21조, 별지 제11호, 제13호)
 - “영 제74조의2제5항” → “영 제91조의11제5항”

규 칙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9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100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
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
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
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대부기간	용 도 (사 용 목 적)	사용·수익 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층 _m²

신청인 주소 :

성명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 무상 사용허
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 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남동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남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남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 및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남동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남동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변경, 해지 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까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남동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남동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동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남동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남동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남동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의) 쌍방 간의 협의로 본 허가조건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남동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자 택		
			점 포		
			휴대폰		
	주 소				
사용·수익 허가내역	시설번호(상호)				
	면적(m²)				
	연사용료(원)				
변경사항	변경 전	(주소, 사용자)			
	변경 후	(주소, 사용자)			
휴업또는폐업 (해당사항 ○ 표시)	기 간				
	사 유				
해지사유	영업부진(), 건강(), 전업(), 기 타()				

상기 신청인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 조례 제4조의2(운영위원회) 제3항에 따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어시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의2(운영위원회)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안 제5조~제8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708호

「운연동 음실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운연동 음실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4.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운연동 음실소하천 정비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69번지 일원
- 사 업 내 용 : 음실소하천(L=605m, A=14,390㎡)
-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설 계 도 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열 랐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
- 열 랐 장 소 :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치수관리팀(032-453-8414)
- 의 건 제 출 :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

- 별첨 참고

주 민 의 견 서

사 업 명	운연동 음실소하천 정비사업	
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69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소유 토지 주소 :	
의견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서명)

남동구청장 귀하

[별첨]

○ 용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사유지			29필지		3,206							
	국·공유지			18필지		11,184							
	총계			47필지		14,390							
1	남동구	운연동		443	도	19,029	258	국(건설부)					
2	〃	〃		458	11 창	127	103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3	〃	〃		458	12 답	90	90	국(기획재정부)					
4	〃	〃		458	13 답	348	236	하*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읍실로**				
5	〃	〃		458	14 답	290	283	국(건설부)					
6	〃	〃		458	15 답	192	192	윤*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7 태평아파트 ***동 ***호				
7	〃	〃		458	17 전	1,247	162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8	〃	〃		458	18 도	5	1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9	〃	〃		458	3 도	1,510	201	국(건설부)					
10	〃	〃		458	5 도	145	44	국(건설교통부)					
11	〃	〃		459	도	66	13	장*경	경기도 시흥시 대곶안길**, 3층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2	〃	〃		459	32 전	3,347	102	이*원 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 ***호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7-71	근저당권, 지상권	
13	〃	〃		459	33 전	1,157	68	김*래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7, ***동 ***호				
14	〃	〃		459	65 전	1,256	61	김*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한국아파트 ***동 ****				
15	〃	〃		459	119 전	1058	99	이*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9번길 *-*				
								이*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호				
								이*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9번길 *-*				
16	〃	〃		459	34 전	1,056	75	김*석 김*연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 ***동 ***호	군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8	근저당권, 지상권	
17	〃	〃		459	111 전	1,835	91	장*경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호(대야동)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18	〃	〃		459	115 전	1,056	64	유*규 김*원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19	〃	〃		459	116 전	1,983	130	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20	〃	〃		459	117 전	1,725	178	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				
21	〃	〃		459	69 전	795	72	경기도					
22	〃	〃		459	1 전	4,075	75	박*봉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4-* 삼성아파트 *동 ***호				
23	〃	〃		459	2 전	3,805	148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남동구	운연동		459	3	전	3,745	39	금*희	인천광역시 논현동 563-2 동보아파트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권	
25	〃	〃		459	53	전	1,834	41	윤*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43, ****동 ***호				
26	〃	〃		459	104	답	199	1	이*원 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_*, ***호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7-71	근저당권, 지상권	
27	〃	〃		463		임	4,205	203	조*순	인천 중구 경동 ***_**				
28	〃	〃		464		답	1,762	441	이철*씨 ***과문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0번길 **				
29	〃	〃		464	1	전	585	15	이철*씨 ***과문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0번길 **				
30	〃	〃		486	1	전	3,187	307	윤*진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22, ***동***호				
31	〃	〃		486	2	전	31	19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32	〃	〃		486	7	전	77	21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33	〃	〃		489	2	전	5,591	11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34	〃	〃		489	7	전	4,975	21	김*중 김*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15, ***동***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30, ***동***호				
35	〃	〃		489	8	전	4,816	290	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20,*** 호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4	근저당권	
36	〃	〃		508	3	도	1,080	592	국(건설부)					
37	〃	〃		516	1	구	651	672	국(농림축산 식품부)					
38	〃	〃		516	2	구	1,648	49	국(농림축산 식품부)					
39	〃	〃		516	3	구	107	110	국(농림축산 식품부)					
40	〃	〃		516	4	구	38	35	국(농림축산 식품부)					
41	〃	〃		516	5	구	3,161	3,131	국(농림축산 식품부)					
42	〃	〃		516	6	구	4,679	4,473	국(농림축산 식품부)					
43	〃	〃		525	1	도	3,211	25	남동구					
44	〃	〃		527	1	도	3,993	26	남동구					
45	〃	〃		525	2	도	2,403	54	남동구					
46	〃	〃		527	2	도	3,315	51	남동구					
47	〃	〃		526		구	1,414	1,018	남동구					

○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장물명	용 도	구조및규격	면적(m2) 길이(m)	단위	수 량	주 소	성 명	비 고
	시	구	동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8-11	건축물		일반철골구조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	임*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8-17	구조물	간이 화장실	판넬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	임*수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32	한전주				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 ***호	이*원 오*이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65	펜스		철제	31.8m			인천 계양구 계산동 355-1 한국아파트 ***-****	김*전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34	펜스		철제	3.6m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7, ***동 ****호	김*석 김*연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16	펜스		철제	23.8m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	김*우	
					구조물		판넬	2.6㎡			／	／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17	펜스		철제	49.9m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	김*우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41.4㎡			／	／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	구조물	관정	콘크리트	2.3㎡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성아파트 *동 ****호	박*봉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63	펜스		철제, 메쉬	5.3m			인천시 중구 경동 ***-**	조*순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99.7㎡			／	／	
					한전주				본	1	／	／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64	펜스		메쉬, 철제	8.6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망로 400번길 21	이**씨**공**회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6-1	펜스		철제	4.0m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22, ***동***호	윤*진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6-2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23.5㎡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6-7	한전주				본	1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8	한전주				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20, ***호	심*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1716호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례 (안 제3조)
-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액 (안 제4조, 제5조)
- 지원 신청 및 방법 (안 제6조, 제7조)
- 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453-5113, FAX 453-51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1]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
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안 제4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안 제5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안 제6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방법 (안 제7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제한 등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남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지원대상자 (신청인)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성별
	산후조리원명			
	소재지		출생일자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대상자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원			
소재지		전화번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제 금액	(원)		

상기인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후조리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 2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홍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719 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추가로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고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고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고

2022년 9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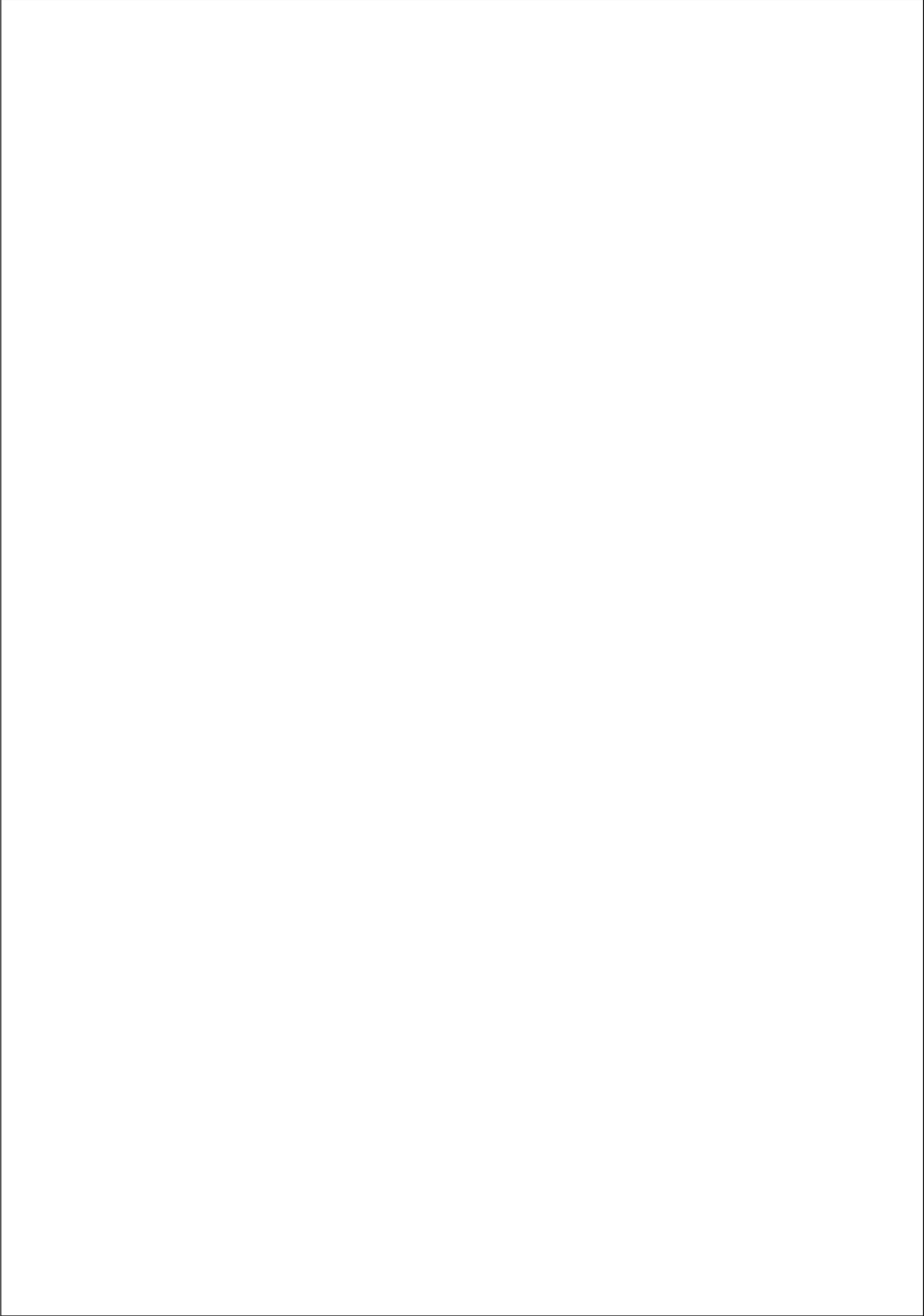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9. 14.(수) ~ 9. 29.(목)

남동구의회 추가제출의안



남 동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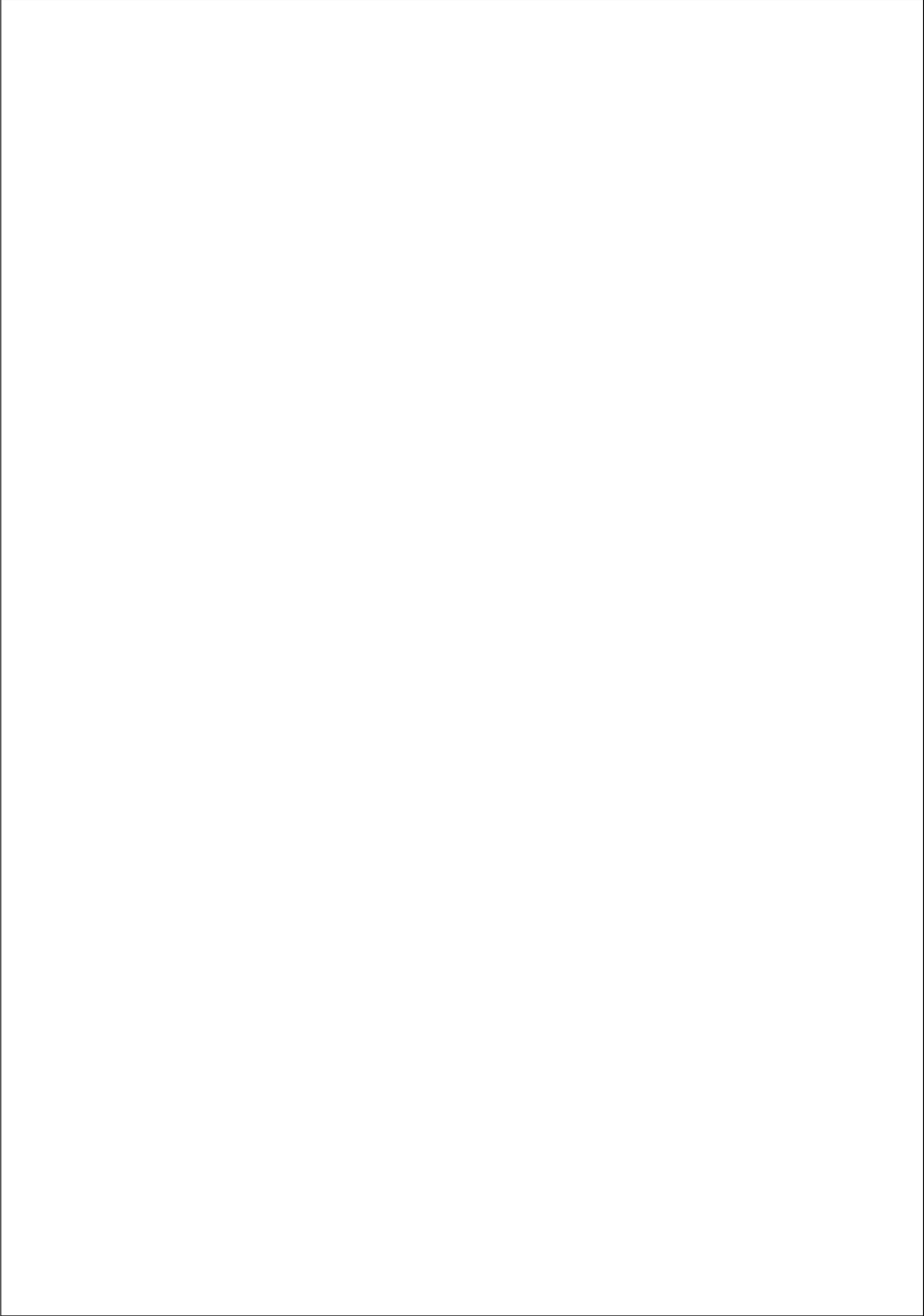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0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1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13명 ⇒ 1,330명 (증 17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기 관 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 국	직 속 기 관	사업 소	동
총 계	1,313→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8→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38	2	9→8	1	20
6급 이하 계	1,230→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13명”을 “1,3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85명”을 “1,30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313명”을 “1,3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8	2	8	1	20
6급 이하 계	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1,313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330명</u> ----- -----.
1. 집행기관 : <u>1,285명</u>	1. ----- <u>1,302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총계 : <u>1,313명</u>	3. ----- <u>1,330명</u>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나. 관련 조문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순 증 : 1,313명 → 1,330명(17명 증원)
- 2022년 예산의 직급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및 물건비(직급보조비) 등 적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3,856,912천원(2022년 ~ 2026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개월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재원 조달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 채 수 입	소 계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지방세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1.5%로 가정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1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1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2) 삭제
 -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무 삭제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사. 의료지도원 임명 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	보건 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의3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 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청문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37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8.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제18조	보건 소장
	19.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3조	
	20.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2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라. 과징금처분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 바. 청문 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차. 외래치료 명령 및 지원 등 카. 보고·검사 등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및 제6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및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	
	22.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3.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4.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건 소장
	25.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시정 명령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료법」 제63조	
	28.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등 처분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보건 소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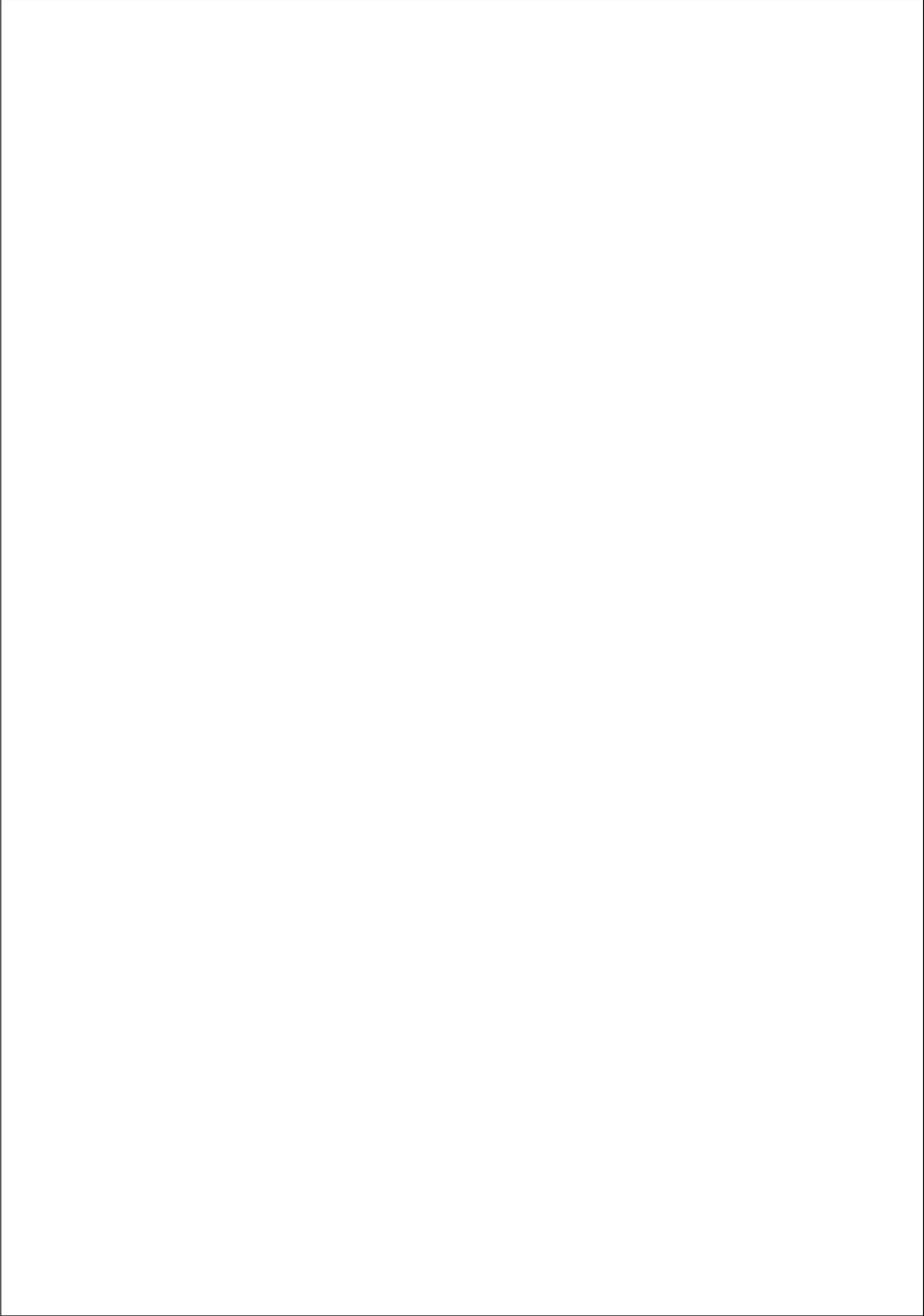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
략
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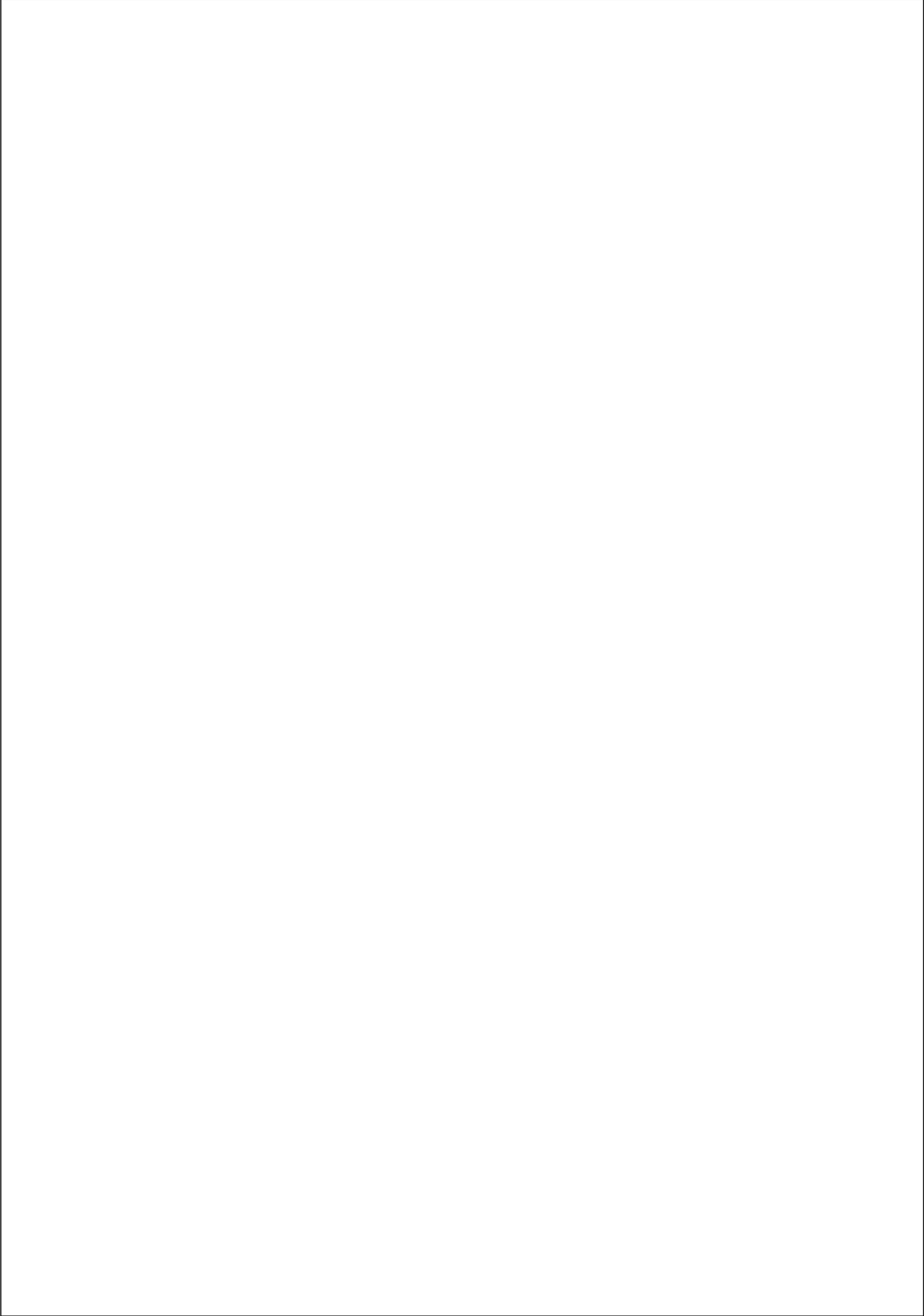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2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1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증감
구 본 청	6국 2실 1담당관 34과	6국 2실 35과	증) 1과 감) 1담당관
의회사무국	1사무국	1사무국	
직속기관	4과 1센터	3과 1센터	감) 1과
사업소	1사업소	1사업소	
동 주민센터	20동	20동	

○ 국 조정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 → 행정국 / 주민복지국 → 복지국 / 도시건설국 → 도시국

○ 부서 조정

- (명칭변경) 대변인 → 홍보실 / 미디어정보과 → 정보통신과 / 세무과 → 세무1과 / 세입징수와 → 세무2과 / 도시경관과 → 도시디자인과 / 공영개발과 → 미래전략과 / 건설과 → 도로과 / 방재하수과 → 치수과

- (폐 지) 소통협력담당관

○ 부서 소속 변경 : 도시디자인과 (환경교통국 → 도시국)

미래전략과 (도시국 → 정책기획국)

식품위생과 (보건소 → 환경교통국)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을 “홍보실”로,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을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대변인)”을 “(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로, “미디어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세무과, 세입징수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제11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도시건설국)”을 “(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건설국에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를 “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중전의 제12조)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2.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13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를 삽입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및 식품위생과” 를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건강과” 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사업소” 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사업소” 를 삽입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을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을 “홍보실”로,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을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으로 한다.

②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국장

③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 을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⑧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 을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⑨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도시건설국장” 을 “도시국장” 으로 한다.

⑩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미디어정보과” 를 “정보통신과” 로 “건설과” 를 “도로과” 로 한다.

⑪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중 “세무과” 를 “세무1과” 로 “세입징수과” 를 “세무2과” 로 “건설과” 를 “도로과” 로 “도시경관과” 를 “도시디자인과” 로 하고,

별표 3 중 “도시경관과” 를 “도시디자인과” 로 한다.

⑫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방재하수과장” 을 “치수과장” 으로 한다.

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징수과장” 을 “세무2과장”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 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으로 한다.

⑭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 을 “세무1과장” 으로 한다.

⑮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 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 실·과장-----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대변인</u> , <u>소통협력담당관</u> , <u>감사실</u> , <u>정책기획국</u> , <u>자치행정국</u> , <u>재정경제국</u> , <u>주민복지국</u> , <u>환경교통국</u> 및 <u>도시건설국</u> 을 둔다.	제3조(실·국의 설치) ----- <u>홍보실</u> ----- ----- <u>행정국</u> , <u>재정경제국</u> , <u>복지국</u> ----- -- <u>도시국</u> -----.
제4조(대변인) <u>대변인</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u>홍보실</u>) <u>홍보실장</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소셜미디어 운영사무</u>
4. ~ 6. (생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5조(소통협력담당관) <u>소통협력담당관</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u>구민소통 계획 수립 및 총괄</u>	
2. <u>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u>	

3. 갈등관리 관련 업무 총괄

4. 집단민원,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5. 주민고충, 집단민원 주무부서 지정 및 관리

제6조 (생략)

제7조(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미디어정보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 15. (생략)

16.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17. · 18. (생략)

제8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6조(정책기획국) ① -----
--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 정보통신과-----
---.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10. ~ 17.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삭제>

18. · 19. (현행 제17호 및 제18호와 같음)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

② 행정국장-----
-----.

1. ~ 9. (현행과 같음)

10. ~ 13. (생 략)

14. ~ 17. (생 략)

18. ~ 21. (생 략)

제9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
에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및 농
축수산물과를 둔다.

② (생 략)

제10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
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
동복지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
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제11조(환경교통국) ① 환경교통
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
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둔
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4.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
13호까지와 같음)

10. ~ 13. (현행 제14호부터 제
17호까지와 같음)

18. ~ 21.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경제국) ① -----
----- 세무1과, 세무2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

--.

② 복지국장-----
-----.

1.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교통국) ① -----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
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
--.

②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1.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12. ~ 19. (생 략)

제12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
국에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 4. (생 략)

5.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6.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신 설>

7. ~ 10. (생 략)

<삭 제>

<삭 제>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9. ~ 16. (현행 제12호부터 제1
9호까지와 같음)

제11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
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
자인과-----
-----.

② 도시국장-----
-----.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10.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
한 사항

6. ~ 9. (현행 제7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신 설>

<신 설>

11. ~ 15. (생 략)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신 설>

제13조(설치) ① (생 략)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및 식품위생과를 두고 의료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생 략)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4장 사업소

<신 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신 설>

제19조 ~ 제21조 (생 략)

11.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2.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3. ~ 17. (현행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삭 제>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제1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건강과-----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업소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
략
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8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9. 29.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9. 14. ~ 2022. 9. 28.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1992-0199139	연경루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7 (구월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6-30	2022-09-29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9. 28.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9. 14.

남 동 구 보 건 소 장